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3 선고 2019가단645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 주식회사

2. D

변론 종결2019. 7. 19.

판결 선고2019. 8. 2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,815,825원 및 그 중 31,293,175원에 대하여 2019. 1. 29.부터 2019. 7. 17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정정 진술하였다)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영은

별지